

#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7. 3. 27.

개정 2021. 9. 23.

개정 2022. 5. 9.

## 제1편 총 칙

###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투자자문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나.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다.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라.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 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별표 2]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른다.
3.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4-1편 투자자 정보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 성향 분석 등)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따라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이메일, 전화번호 등에 대한 최신정보도 포함)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 제4-2편 투자 권유

#### 제10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5.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1항에 따른 [별표 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3호]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5]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타.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나.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4-3편 설명의무

### 제14조(설명 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4.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 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3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가.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제18조(청약의 철회)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투자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후 회사에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5.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9조(위법계약의 해지)**

1. 회사가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을 포함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전 투자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회사는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라. 회사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수행한다는 사실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아.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차.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2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가호 및 나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3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1.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

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소비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 2. 임직원 등은 가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호]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가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가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4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별지 제6호]와 같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자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10년
  - 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10년
  - 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10년
  - 라.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0년
    - (1) 4. 5.에 따른 투자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2)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3)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5년
  - 바.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10년
  - 사. 가부터 바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투자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하여 금소법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17. 3. 27. 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1. 9. 23.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2. 5. 9.부터 시행한다.







10.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위험에 대한 이해도는?      ① 거의 이해 못하고 있음      ② 일정 부분 이해  
 ③ 깊이 있게 이해      ④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대부분 이해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의 정기적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니다.

법인명: (서명/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본인의 판단에 따라)투자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확인합니다.

해당상품명 및 위험등급 ( 이루다 투자일임계약 ) ( 등급)

법인명: (서명/인)

● 추심이체 출금동의 동의 확인

수수료 발생시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발생된 수수료가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주)이루다투자일임의 계좌로 자동 납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와 계약한 금융거래정보(거래증권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 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법인명: (서명/인)

## 투자자정보 확인서

### 3.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4-4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 투자자정보 항목

일반적인 투자성향	1.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이하 ② 20세 ~ 40세 ③ 41세 ~ 50세 ④ 51세 ~ 65세 ⑤ 66세 이상
	2.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어요.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요.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어요.
	3. 투자해 본 적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주식신용거래, 선물/옵션, ELW, 원금비보장형ELS/DLS ② 국내주식, 해외주식, 주식형펀드, 해외펀드, 자문/일임 ③ 채권/혼합형펀드, 신탁, 채권 ④ 투자경험이 없어요.
	4 자산 중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① 5% 이하 ② 5% 초과 ~ 10% 이하 ③ 10% 초과 ~ 20% 이하 ④ 20% 초과 ~ 30% 이하 ⑤ 30% 초과
	5. 월소득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③ 4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④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⑤ 3,000만원 초과
	6. 원금보존과 투자수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①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해요. ②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이 더 중요해요. ③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이 중요해요.

	7. 투자시 발생하는 손실은 얼마나 견딜 수 있으세요?	① 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 견딜 수 있어요. ② 원금 중 일부의 손실은 괜찮아요. ③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현재 투자자금 성향	8 투자 목적을 알려주세요.	① 안정적인 노후자금                      ② 아늑한 내 집 마련 ③ 우리 아이 교육                              ④ 여유자금 투자 ⑤ 나에게 주는 선물                          ⑥ 다가올 해외여행 ⑦ 기타 다른 목적
	9. 예상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의 정기적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니다.

고객명: (서명/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본인의 판단에 따라)투자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확인합니다.

해당상품명 및 위험등급 ( 이루다 투자일임계약 ) ( 등급)

고객명: (서명/인)

● 추심이체 출금동의 동의 확인

수수료 발생시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수수료가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주)이루다투자일임의 계좌로 자동 납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와 계약한 금융거래정보(거래증권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 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고객명: (서명/인)

● 직원기재

- 취약투자자 해당여부                       YES                       NO
- 65세 이상 투자자 또는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기타 취약투자자 해당하는 자(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등)



[별지 제3호]

##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 2. 고령투자자 정의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초고령투자자 : 80세 이상
- 계좌 명의인이 아닌 그 대리인이 고령투자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기준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 내 고령투자자 전담부서 및 전담 직원을 지정합니다.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투자권유절차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 4. 투자권유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준법감시담당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령투자자에게 투자자문계약·일임계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유의사항을 고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인 고객님께서서는 투자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재산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되므로 투자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일임재산의 투자대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ETF는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의 확정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는 발행회사나 해당 상품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조건의 변경(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해외투자의 경우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 자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5.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 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준법감시담당자가 기록·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 자제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 자제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
-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회사보관용)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대상 금융투자상품: \_\_\_\_\_
- 상대적 위험도: 총(     )단계 중(     )번째로 높음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서 교부직원: 직위\_\_\_\_\_성명\_\_\_\_\_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1. (투자권유)를 대면하여 (받았음, 받지 않음)
2. (투자설명서)를 (받았음, 받지 않음, 교부를 거부하였음)
3.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4. 예금자보호대상 아님(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됨)
5.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6. (주요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년            월            일

고객 \_\_\_\_\_(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 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 매도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업 자			
<p>*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의 회사참고사항을 참조할 것</p> <p>* '경고'위험도에 <b>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b>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p>			

[별지 제6호]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테스트베드는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 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투자자성향

투자성향	정의
공격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존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하고 자산 중 일부를 위험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별표 2] 적합성 판단 기준

투자자 성향	공격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위험 분류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별표 3]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위험도 구분	위험도 점수	금융투자상품
초고위험	5	해외 주식, 해외 주식형 ETF, 기타 ETF
고위험	4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중위험	3	-
저위험	2	채권형 ETF
초저위험	1	현금 외 현금성 자산
무위험	0	현금